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4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26일

발 의 자: 박성연,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윤종복,
이은림,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최윤희, 최진혁,
최호정, 홍국표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 상당수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워 정비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기준으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의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 내의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1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 내의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u> <u>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120</u></p>

<p>② ~ ④ (생 략)</p>	<p><u>제공미터 미만인 토지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u> <u>나.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u> <u>다.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